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21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이만희·권영진·구자근

이종배 · 김소희 · 김기웅

조은희 · 서천호 · 김예지
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주요내용

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, 해송, 잣나무 등에 침입하여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매우 위험한 산림병해충으로 이 병에 감염되면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감염된 나무는 전부 고사하고 있는 실정임.

그런데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은 총 305만 7,344그루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, 신규 발생지역 상당 부분이 인위적인 확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. 2022년~2024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14개 시·군 중 64.3%인 9개 지역이 감염목을 화목·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위적 확산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인 감염목 등을 판매·이용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5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한 자
- 3.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보유·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7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17조(벌칙) ①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			
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			
하의 벌금에 처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.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		
	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한		
	<u>자</u>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			
벌금에 처한다.		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3.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	3.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		
여 감염목등을 판매・이용하	<u>여 감염목등을 보유·발견하</u>		
거나 감염목등을 보유·발견	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		
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